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- 1819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
2026. 11. 3.

노 원 구 청 장

1. 공고내용 :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
2. 공고기간 : 2026. 11. 3. ~ 2026. 11. 17.
3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공고대상 : 아래 내역 참조
5. 처분근거
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
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0조제1항
6. 기타사항
 - 불법행위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원구청 푸른도시과(☎02-2116-0563)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또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공 시 송 달 내 역

▣ 불법행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통보

행위자	불 법 행 위						비고
	위 치	내 용	면 적(㎡)	구 조	용 도	행위년도	
김*기	상계동 산161-*	불법건축물 건축	26.1	판넬 /시멘트	사무실	2003년	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 견	
	기 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